#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37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양문석・이재강・박수현

민형배 · 양부남 · 서미화

조계원 • 허성무 • 이강일

한정애 · 강유정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 법률 제 호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 와 그 배우자
  -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 자
  - 다.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 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 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호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 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 귀국하는 자를 말한다. 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 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 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 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 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 본다. 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 와 그 배우자 다.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 국하는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 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

속 1명과 그 배우자